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99
----------	-----

제출년월일 : 2005. 2. 23.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 부서 신설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정원의 총수	635명	651명	16명
1.집행기관의 정원	621명	637명	16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14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에 규정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 ○ 관련법령 및 근거

-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2004.12.18)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2004.11월)
-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보강지침(2005. 2. 3)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본문중 “635명”을 “651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621명”을 “637명”으로 한다.

제3조본문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고성군 조례 제1792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03조</u> 및 <u>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u> <u>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u>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35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21명</u> 2. (생략)</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lt;2004.9.14 조 1792&gt;</p> <p>①~③(생략) ④(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u>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u> <u>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u></p>	<p>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u> <u>기준 등에 관한 규정</u>」-----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51명</u> ----- -----</p> <p>1. ----- : <u>637명</u>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 ----- ----- <u>「별표1」과 같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lt;2004.9.14 조 1792&gt;</p> <p>①~③(현행과 같음) ④(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u>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51	295	14	125	32	26	159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524	242	8	80	25	24	145
4급	1	1					
4~5급	2	1		1			
5급	34	12	3	3	2	1	13
6급	137	67	2	11	5	5	47
7급	157	82	1	23	6	5	40
8급	126	56	1	34	7	7	21
9급	67	23	1	8	5	6	24
별정직 계	14	1	0	13	0	0	0
6급상당	1	1					
6~7급상당	12			12			
7급상당	1			1			
연구직 계	0	0	0	0	0	0	0
연구관	0						
연구사	0						
지도직 계	25	0	0	25	0	0	0
지도관	2			2			
지도사	23			23			
기능직 계	87	51	6	7	7	2	14
기능6급	3	2	1				
기능7급	8	8					
기능8급	16	13			3		
기능9급	26	15	3	3	1	1	3
기능10급	34	13	2	4	3	1	11